

가정간호사 자격과 업무 및 가정간호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정 검토

*김의숙, **김기경, ***고일선, ****김주희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지정연구소 · 연세대학교 간호정책 연구소)

I. 들어가는 말

의료법(2000.1.12 법률 제6167호)의 개정·공포에 따라 동 법률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안이 2000년 4월에 입법예고 되었다. 이 법안을 보면 가정간호사업(제25조의2)과 가정간호사(제25조의2 제2항, 제56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자 한다.

가. 의미

- 의료법령에 최초로 가정간호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의료법제30조 제1항)과 위임된 세부규정을 입법하였다.
- 가정간호사를 전문간호사자격 외에 2년이상의 임상경력을 요구함으로서 가정간호실시요건을 강화하였다.
- 병원중심의 가정간호 모델에 근거하여 개설기관, 기관의 조직(부서), 대상(의사 의뢰자), 처치의 제한(처방, 범위규정), 기타(처방 유효기간, 기록)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나. 문제점

1) 법논리상의 제한점

기존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와 다른 별도의 서비스 제도로 인정하지 않고 기존 의료기관의 의료행위를 가정에서의 확장적, 예외적인 허용이라는 논리를 취함으로서 법정책적 제한이 이미 내포되어 있다.

2) 가정간호 제공

병원 중심의 가정간호모델을 전제로 가정간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제공이 의사의 의뢰와 처방에 의존하고 있다.

3) 개설자의 제한

법안 제25조의2 제1항에는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의료기관으로 제한하고 그중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에 국한시키고 있어 결과적으로 가정간호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함으로서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이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있다.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간호학과 연구강사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 연세대학교 간호정책연구소 연구원

4) 대상자의 제한

법안 제25조의2 제3항 제4호를 보면 의사(가정간호사업실시 기관의 소속)가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간호사에게 의뢰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함으로서 가정간호대상자를 제한시키고 있다.

5) 가정간호행위의 제한

법안 제25조의2 제3항 제5호를 보면 가정간호사가 검사,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가정간호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가정간호사가 간호진단에 의한 검사 및 처치 등에 관하여 권한을 부여받거나 일정한 범위에서 처방권과 처치권을 인정하는 부분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6) 가정간호사의 가정간호업무를 위한 자격규정

법안 제24조의2 제2항에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간호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임상경력 2년 이상인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자격이수이의 임상경력이라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적합성이 맞지 않는 규정이다. 대부분의 자격을 규정하는 법은 자격이란 그 자격범위에 포함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그 업무수행을 위해 그외의 요건을 더 충족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 제56조에 가정간호사 자격인정의 요건으로서 임상경력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현행 입법추진되는 병원중심의 가정간호 법안은 여러 가지 내제적, 외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법안은 가정간호서비스의 본래의 취지와 장점,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입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많다. 병원중심의 가정간호서비스에 국한하여 가정간호서비스를 계획하는 현실적 이유와 문제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와 같은 한계는 극복되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앞으로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문에서 제시될 법안은 앞서 지적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정간호서비스제도의 발전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한 입법안으로 보여진다.

지금의 눈으로 볼 경우 이 법안은 여러 보건의료관련법 및 관련제도와 상당부분 상충될 수 있다. 특히 의사의 의업권과의 갈등과 충돌이 야기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의사의 진료보조적 역할을 강조하는 지금의 의료법적 체계에서 상당부분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간호사의 자격과 업무를 규정한 간호법체계를 구축하고 각 법에 흘어져 있는 간호사의 업무관련 규정들의 체계화를 이루며 현재

의 극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입법태도를 극복한다면 이와 같은 갈등은 그리 큰 어려움은 아닐 것이다. 보건의료시장은 가운데 두고 전문가집단간의 경쟁이라는 측면보다는 국민이 보다 필요로 하고 비용이 드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보건복지적 측면에서 간호사의 가정간호사업은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아왔다. 이와 같은 가정간호사업의 활성화를 계기로 간호사의 법적 역할과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법안이 앞으로의 가정간호정책 뿐만 아니라 간호정책과 입법 방향을 이끌게 될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Ⅱ . 가정간호사 및 전문가정간호사의 자격인정 및 업무, 가정간호사업 등에 관한 법

■ 입법 형식

가. 가정간호사업에 대한 법의 입법형식

- ㄱ. 의료법에 규정
- ㄴ.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
- ㄷ. 별도의 법(특별법)으로 규정

나. 가정간호사에 대한 법의 입법형식

- ㄱ. 의료법에 근거하여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
- ㄴ. 별도의 규정

다. 가항과 나항을 별도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법으로 규정할 것인지 문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간호사 및 전문가정간호사의 자격인정과 업무 및 가정간호사업에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사회에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제2조(정의)

- ① 가정간호라 함은 해당 의사 및 해당 전문가정간호사가 가정간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가정간호 또는 법이 정한자가 병원이외의 장소(가정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서 행하는 처치 및 돌봄을 말한다.

- ② 가정간호사라 함은 간호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이법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가정간호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 ③ 전문가정간호사라 함은 간호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이법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전문가정간호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 ④ 가정간호사업이라 함은 가족의 건강 유지, 증진, 회복을 위하여 가정간호사업소를 중심으로 가정을 비롯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보건복지사업을 말한다.
- ⑤ 가정간호사업소라 함은 가정간호사업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설치한 사업소를 말한다.

제2장 가정간호사 및 전문가정간호사

제3조(가정간호사의 자격인정)

- ① 가정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간호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의 가정간호과정을 이수한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가정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간호사자격시험을 간호사회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

제4조(전문가정간호사의 자격인정)

- ① 전문가정간호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가정간호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간호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대학원 또는 그수준이 달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가정간호사로 3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국가 또는 전문단체에서 전문가정간호사의 자격인정을 받은자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정간호사자격시험을 간호사회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

제5조(교육)

- ① 가정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에서 이법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전문가정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 법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교육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

- ① 가정간호사 및 전문가정간호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가정간호사의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 ① 가정간호사의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간호대학으로 대학병원과 연계를 맺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종합병원은 가정간호사업소가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가정간호사의 기술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가정간호교육생의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가정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 ① 전문가정간호사의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학원이 개설된 간호대학으로 대학병원과 연계를 맺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대학병원은 가정간호사업소가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가정간호상의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전문간호사의 현장 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훈련자(preceptor)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교육기관장의 권한)

-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9조가 정한 범위안에서 가정간호 및 전문가정간호교육생을 선발하고 교육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 ② 교육기관의 장은 가정간호 및 전문가정간호교육생이 교육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교육생을 제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기록의 비치)

-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1. 가정간호 및 전문가정간호교육생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칙
 2.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생의 교육기록
 3. 교육과정에 따른 회의기록
 4. 전문가정간호교육과 관련된 학술집회 기록
- ② 제1항의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생의 선발 및 해임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가정간호 및 전문가정간호교육생의 선발 및 해임 시에는 이를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기관의 장에 대한 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생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교육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지정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의 각호 1에 해당될 때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 또는 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1. 제7조에 의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일 때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생의 정원을 초과하여 선발할 때
3.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할 때

제14조(청문)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자격의 유지)

- ① 가정간호 및 전문가정간호사의 자격유효연한은 자격취득일로부터 3년이며 자격갱신을 위해 규정된 전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자격갱신을 위한 전문교육에 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자격시험)

- ① 제14조 제2항에 의한 가정간호 및 전문가정간호사의 자격시험은 간호사회에서 실시한다.

- ② 가정간호 및 전문가정간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호서식에 의한 자격시험응시원서를 간호사회장에게 제출한다.
③ 가정간호 및 전문가정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간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장이 발행한 가정간호 및 전문가정간호교육과정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2. 간호사면허증 사본
 3. 사진 3매

제17조(시험의 시행)

- ① 가정간호 및 전문가정간호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간호사회장은 가정간호 및 전문가정간호사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가정간호사등의 시험과목 및 방법)

- ① 가정간호사 및 전문가정간호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다만 동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된 자로서 외국의 전문가정간호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전문가정간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1차 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1차 시험에 합격한 자가 2차 시험에 불합격한 때에는 다음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 가정간호사 및 전문가정간호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제19조(응시자격의 제한)

- ① 부정한 방법으로 가정간호사 및 전문가정간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자격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후 2회에 걸쳐 가정간호사 및 전문가정간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20조(시험실시결과보고)

간호사회장은 가정간호사 및 전문가정간호사의 자격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간호사의 면허번호 및 면허년월일, 응급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의 수험번호등이 기재된 합격자 대장
2. 합격자의 성적대장
3. 가정간호사 및 전문가정간호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예 정증명서(외국의 응급전문간호사 자격인 경우 그 자격증의 사본)
4. 사진 2매(출원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제21조(자격인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의한 시험실시 결과보고를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간호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의를 거쳐 가정간호사 및 전문가정간호사 자격인정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간호사 및 전문가정간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정간호사 및 전문가정간호사 자격인정대장에 등록하고 자격증을 교부한 후 그 사실을 간호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자격인정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간호사 및 전문가정간호사 자격대장을 비치하고 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 성별 · 주민등록번호 · 본적
2. 가정간호사 및 전문가정간호사 자격인정번호 및 자격인정년월일
3. 가정간호사 및 전문가정간호사의 자격시험 합격년월일
4. 간호사 면허 번호 및 면허년월일

제23조(준용규정)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 자격등의 교부, 서화, 갱신, 재교부등에 관하여는 의료법시행규칙중 간호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수수료)

- ① 가정간호사 및 전문가정간호사 자격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자격증의 서화, 갱신 또는 재교부수수료 2,000원
 2. 가정간호사 및 전문가정간호사 자격의 등록증명수수료 500원
-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가정간호사 및 전문가정간호사의 업무

제25조(가정간호사의 업무)

가정간호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다.

- ① 가정간호사의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환자의 사정 및 검사(특히 최신정보통신망과 장비를 이용한)
 - 치료 및 관리 계획
 - 투약 및 주사 : 정해진 약품 및 기구 사용
 - 교육 및 상담
 - 의사의 처방에 의한 처치
 - 치료적 처치(상병악화 방지를 위한)
 - 응급처치(심폐기능 유지를 위한)
 - 교육 및 지도
 - 퇴원계획
 - 의뢰
 - 임종
 - 호스피스

- ② 제1항의 각호의 업무외에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 모자보건을 위한 업무
- 기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정간호지침에 의하여야 한다.

제26조(전문가정간호사의 업무)

전문가정간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다.

- ① 전문가정간호사의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가정간호사의 업무
 - 가정간호사업소의 개설과 관리
 - 가정간호이용자의 선별
 - 가정간호사의 기술적 지원 및 관리
 - 가정간호사업의 평가 및 보고
 - 간호조무사, 간병인등의 종사자 감독
 - 의료기관과의 연계 및 사회복지사업자와의 연계
- ② 제1항의 각호의 업무외에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가족 상담
- 사례관리자(Case Manager)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정간호지침에 의하여야 한다.

제27조(가정간호기록등의 유지, 관리의무)

- ① 가정간호사업자는 가정간호 이용자의 진료 및 간호기록등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록등은 5년간 보관한다.

제28조(병원과의 연계)

- ① 가정간호사들은 응급상황시에는 가정간호이용자를 인근 병원으로 연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기록 등을 함께 후송하여야 한다.
- ② 가정간호사들은 필요한 경우 가정간호이용자를 다른 의료기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2항의 사항은 전문가정간호사 또는 해당 주소지의 보건소 담당 의사 또는 소속 의료기관의 전문의의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제29조(신고의 의무)

- ① 가정간호사들은 법적 전염병 및 공공위생을 해할 위험이 있는 질병의 발생시 이를 해당 주소지의 보건소를 통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가정폭력 등을 목격하거나 의심스러울 경우 이를 해당 주소지의 보건소를 통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가정간호사업소

제30조(가정간호사업소의 설치 운영)

다음 각호의 자가 가정간호사업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시장, 군수가 (보건소 연계)
2.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3.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4. 사회복지법인
5. 전문가정간호사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제31조(개설등록)

- ① 가정간호사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엄어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력기준 및 시설기준에 따른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
 2. 정서적, 도덕적 지탄을 받은 자

제32조(개설등록의 신청)

- ①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간호사업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가정간호사업소등록신청서에 사진2매를 첨부하여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가정간호사업소등록대장과 등록증)

제34조(가정간호사무소의 관리의무)

- ① 가정간호사업소 개설자는 가정간호사업소를 관리하여야 하며 그럴 수 없는 경우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가정간호사업소의 관리자는 전문가정간호사여야 한다.
- ③ 가정간호사업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가정간호사업소관리자의 승인신청)

- ①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개설자가 관리자를 두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호 서식에 의한 가정간호사업소관리자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가정간호사업소 관리의 준수사항)

- ①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간호사업소의 개설자와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원 및 인력 관리
 2. 서비스 질관리
 3. 약품 보관 및 기구 소독 관리

4. 환자 기록의 관리

- ② 가정간호사업소관리자를 두고 있는 경우 개설자는 관리자로부터 제1항 각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받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인증)

가정간호사업소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이 정한 인증기관에서 5년마다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정간호사업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8조(폐업등의 신고)

가정간호사업소개설자는 가정간호사업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협력의사)

- ① 가정간호사업소는 전문의 1인 이상을 가정간호사업소의 협력의사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0조(사업)

가정간호사업소는 가정간호사에 의한 가정간호업무 수행이외에도 다음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와 보건과 복지의 연계
2.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의 정보제공 및 교육
3. 지역사회 건강문제 조사 및 보고
4. 지역사회 노인의 건강 진단 및 보건교육
5. 만성퇴행성질환자의 등록과 관리
6. 재가복지사업자에 대한 지원
7. 가정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활동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야 할 사항〉

- 가정간호사 및 전문가정간호사의 교육과정
- 가정간호사 및 전문가정간호사의 자격갱신을 위한 전문교육 및 사업소의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 가정간호지침